食品 等 衛生監視業務處理 規程

保社部訓令 第153号로써 지난 71. 12. 15. 食品衛生管理業務指針(保社部訓令第111号및 第131号)을 改正公布했는데 그 規程 全文을 이에 揭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령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복무 요령과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므로서 식품위생 행정의 능율화와 과학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 및 검사기관) 이 업무의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 (이하"행정관청"이라한다)로 하고 검사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 위생시험소 (이하"검사기관"이라한다)로 한다.

제3조 (업무계획수립) (1) 행정관청은 자기관내에 소재하는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이하"식품영업소"라한다)의 분포상황을 기초로하여 년간의 월별위생감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은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식품등의 종류별, 월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감시원의의무) 식품위생감시원 (이하"감시원"이라한다)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무사 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무범위) (1)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식품등의 감시사항으로 한다.

제2장 식품등의 수거검사

제6조 (검체의 수거) (1) 검체의 수거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 (이하"시·도"라한다)가 관할지역의 식품등의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수거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보건사회부가 수거할 수 있다.

(2) 검체의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재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보관량을 포함한다)으로한다.

(3) 검체는 동일제조년월일 동일포장단위 등 동일모집단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4) 검체를 수거할때에는 구입경로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5) 부패성이 강하거나 미생물학적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검체는 수거용기, 시간 검사기관과의 거리등으로 인하여 수거이후에 검체의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거의 우선순위) 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다음 순위에의하여 수거하되 규격 및 기준이 제정된 식품 또는 소비량이 많은 식품을 우선으로 하고 특히 시설이 불실한 제조업소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수거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품목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다고 의심되는 품목

(3) 판매가격이 현저히 싸다고 인정되거나 동류제품으로서 그 가격의 차이가 심하여 제조과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의심되는 품목

(4) 차관서 관할구역관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제 8 조 (수거증의 기재) (1) 식품등을 수거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되 기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추가 기록하되 3부를 동시에 작성하여 1부는 피수거자에게 1부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남어지 1부는 편철하여야 한다.

1. 수거품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수거품의 종류 및 성상
3. 수거품의 제조년월일 또는 제조번호
4. 수거품의 구입일자 또는 구입처

(2) 전항의 경우 수거품의 명칭과 제조업소의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피수거자의 날인을 받어야 한다.

제 9 조 (수거증의 관리) 행정관청은 수거증을 편철하고 각 수거증에 일연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거증 대장을 비치하여 담당계장급 이상의 점검을 받어야 한다.

제10조 (검체의 관리) 검체를 수거한자는 검체를 봉함 봉인하여 이를 검사기관에 송부하며 검사기관은 검체의 일부를 검사에 사용하고 당해 검체의 검사결과가 부적합인때에는 남어지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 부터 90일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난하거나 부패성이 큰 식품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지시) (1) 행정관청은 수거한 검체를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이송하고 검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2) 규격및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의 검사는 당해품목의 규격 및 기준에 정한 시험항목을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등을 참고하여 위생상 유해한 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 있지않은 식품등은 위생상 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항목을 정하여 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행정관청은 전항 검사항목 이외에 제조년월일 또는 수거장소등 검사에 참고가 될수 있는 사항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업무) 검사기관은 검사지시를 받었을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되 다음사항을 미리 검토한후 시험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검체수량의 적정여부
2. 검사 가능여부

제13조 (검사불능에 대한 조처) (1) 행정관청으로부터 검사지시를 받은 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등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할 수 없을 때에는 동 검체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지체없이 회송하여야 하고 그 검체를 회송받은 당해 행정관청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지시 하여야 한다.

(2) 검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관할행정관청에 당해 검체의 소요량을 추가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성적서의 작성)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성적서에는 행정관청이 지시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명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이 불가능할때에는 그 사유 및 기타 참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통보) (1) 행정관청은 관할업무에 대하여 이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사항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2) 시·도는 타 행정관청의 관리에 속하는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이령20조에 정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험성적서사본및 시험방법의 개요를 기재하고 수거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그 식품등을 허가한 당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사회부장관과 허가를한 행정관청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영업소의 임검

제16조 (감시방법) (1) 감시원이 아니면 식품위생 감시를 행할 수 없다.

(2) 감시업무는 사전에 서면으로 상사의 결재를 득한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구두로 보고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3) 감시업무는 근무시간중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예외로 행할 수 있다.

(4)감시업무는 2인 이상의 감시원으로 조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한후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6)감시사항이 극히 중요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 협조를 얻어 행할 수 있다.

(7)피감시자 또는 제3자가 감시원의 감시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부당한 압력을 가할때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법에의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시사항) (1)감시원이 식품영업소에 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의 적부와 위생관리상태에 관한사항
2.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등이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제조공정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물질이 ,위생상 안전한지의 여부와 실험실의 운영실태
4. 제품의 표시기준 이행상태
5. 종업원의 건강진단 식품위생관리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근무상태
6. 허가관청의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준수 하여야할 사항의 이행상태

(2) 전항의 감시결과 검사의 필요가 있을때는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제18조 (감시의 구분)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1) 정기감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과 제40조 제2항에 규정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년4회이상 동조 제32호 내지 제42호의 영업에 대하여 년3회이상, 동조 제5호내지 제31호 및 제43호의 영업에 대하여는 년2회이상, 기구, 용기, 포장제조업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감시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명에 의하여 수시로 행한다.

제19조 (임검의 범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실시하는 임검은 관할 시·도가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임검실시 40일 이전에 그 실시계획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임검을 실시하였을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에 위생검사표 원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및 그 관리

제20조 (행정처분) (1) 식품등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제품 및 위생감시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1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다.

(2)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중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의 표시를 그 업소의 정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행정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행정관청의 게시판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이 확정되기 까지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처분관리) (1) 행정관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생감시 기록부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과장 이상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이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영업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고 경고처분사항에 대하여는 3월 이

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1972. 1. 1부터 시행한다.
2. (폐지) 보건사회부 훈령 제111호 및 제131 호 식품 등 위생관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제3조,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9조 내지 제23조, 제27조, 제28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할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는 그 품목이 품목허가 대상일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 업무를 3월이상, 품목허가가 아닌 영업허가 대상일 때에는 전 영업을 1월 이상 정지처분 하며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 을 경우에는 승계자에게 적용한다.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품질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을 공급, 판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진열할 때 (1) 부패 변질되었거나 미숙하여 인체에 유해한것. (2)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된것. (3)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것.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수축 및 병사한 수축의 뼈, 고기, 부즙(浮汁) 장기또는 혈액.	영업허가취소와 당해 물품 폐기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영업허가취소와 당해 물품 폐기
	다. 법령으로 정한 규격 및 기준에미달된식품 및 첨가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또는 조리할 때. (1) 첨가물로서 함량이 기준보다.	
	(가) 10% 이상이 부족할 때.	(가) 품목 허가 취소와 당해물품 폐기.
	(나) 5%이상 10%미만의 부족할 때.	(나) 품목 영업정지와 당해 물품폐기.
	(다) 5%미만의 부족할 때.	(다) 경고
	(2) 첨가물 제제로서 주성분의 함량이 허가 사항의 배합비율에 비할 때	
	(가) 20%이상의 부족할 때	(가) 품목 허가 취소와 당해품목폐기
	(나) 10%이상 20%미만의 부족할 때	(나) 품목 영업정지와 당해물품 폐기
	(다) 10%미만의 부족할 때.	
	(3) 식품으로서 그 품목의 규격 및 기준중 중금속 비소, 씨안화물, 호름알데힘, 메칠 알콜, 포스파타제 등의 시험항목에 위반될 때.	(3) 영업 또는 품목 허가취소와 당해물품 폐기.
	(4) 식품으로서 그 품목의 규격 및 기준중 항생물질, 산가, 아질산 산근검화가, 요드가, 불검화물, 과산화물, 대장균군 일반세균, 유리광산, 암모니아성질소, 인삼성분 휴셀유 및 첨가물의 사용기준에 위반될 때	(4) 품목 영업정지와 당해 물품 폐기
	(5) 식품으로서 인공 감미료 또는 타알색소의 사용이 금지된 품목으로서 시험결과 검출될 때	(5) 품목 영업정지
	(6) 식품으로서 그 품목의 규격 및 기준중 유산균군 또는 효모수, 전질소 조단백질, 조지방질, 순엑기스, 유지방분, 당분 무지유고형분, 원엑기스 분등의 시험결과가	

	(가) 기준치에 비할 때 10%이상의 부족할 때	(가) 품목 영업정지와 당해물품폐기
	(나) 기준치에 비할 때 10%미만의 부족할 때	(나) 경 고
	(7) 식품으로서 위(3) 내지 (6)에 기재한 시험 항목 이외의 시험 항목이	
	(가) 1항목이 위반될때	(가) 경 고
	(나) 2－3항목에 위반될때	(나) 품목 영업정지
	(다) 4항목 이상이 위반될 때.	(다) 품목 허가취소와
	(8)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허용외 화학적합성품을 함유할 때.	(8) 품목 허가취소와 당해 물품 폐기.
	(9) 식품 첨가물로서 규격 및 기준중 비소, 중금속, 납, 호름알비힌, 시험에 부적합할 때	(9) 품목 허가취소 및 당해 제품 폐기
	(10) 식품 첨가물로서 전항에 기재한 시험항목 이외의 시험 항목이	
	(가) 1항목에 위반될때	(가) 경 고
	(나) 2－3항목에 위반 때.	(나) 품목 영업정지와 당해 물품폐기
	(다) 4항목 이상에 위 위반될 때	(다) 품목 허가취소와 당해 물품폐기
	(11)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그 품목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 있는 품목이라도 규격 이외의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경우	(11) 경 고
2. 기구, 용기, 포장	규격 및 기준에 부적합한 기구, 용기, 포장을 사용할 때	가. 영업정지와 당해 물품 폐기
3. 표시기준	가. 표시기준에 1차 위반일 때.	가. 경 고
	나. 경고처분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	나. 품목영업정지
4. 허위표시	가. 허위표시를 할때.	가. 품목영업정지
5. 제품검사	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및 첨가물을 제품검사를 받지않고 제조 판매할 때.	가. 품목영업정지
6. 식품위생관리인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에	
	가. 두지 아니한 때	
	(1) 1월간 이상	(1) 영업정지
	(2) 1월미만	(2) 경 고
	나. 근무상태가 불량할 때	
	(1) 1월간 이상 결근할때	(1) 영업정지
	(2)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제품 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교체명령
7. 조리사,영양사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어야할 영업에	
	가. 영양사,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때	
	(1) 1개월 이상 두지아니할 때	(1) 영업 정지 (또는 폐쇄조치)
	(2) 1개월 이내	(2) 경 고
	나. 두었으나 근무상태 가 불량할 때.	
	(1) 1개월 이상 결근	(1) 영업정지
	(2) 1개월 이내 결근	(2) 경 고
8. 신고의무와 조건의 불이행동	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을 동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할 때	가. 영업허가취소
	나. 영업허가 또는 품목 영업허가시 허가 관청에서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때	
	(1) 영업허가 조건 불이행	(1) 영업정지
	(2) 품목 허가조건 불이행	(2) 품목 영업정지
	다.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때	
	(1) 6개월이상 신고하지	(1) 영업 허가

	아니한 때	취소
	(2) 1개월이상 6개월이내 신고하지 아니할 때	(2) 영업정지
	(3) 1개월이내 신고하지 아니할 때	(3) 경 고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장소나 시설을 변경한 것.	
	(1) 영업장소 변경	(1) 영업 허가 취소
	(2) 시설을 법정 기준에 미달되도록 감소 변경	(2) 영업정지
	(3) 시설을 법정시설 기준에 미달되지 않은 범위내로 변경	(3) 경 고
	마. 영업을 타인에게 배여하여 타인이 영업을 한때	마. 영업허가 취소
9. 행정명령불이행	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의 행정처분 을 불이행할 때	
	(1) 개수 명령사항을 기한내 불이행할 때	(1) 영업 허가 취소
	(2) 경고사항을 3개월이내에 시정치 아니할 때	(2) 영업정지
10. 기타	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각호에 준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합니다.